##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태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573

발의연월일: 2020. 9. 7.

발 의 자:이태규·성일종·박대수

최연숙 • 이명수 • 김영식

김정재 • 김석기 • 조정훈

허은아 · 윤영석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차입한 상장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 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.

그러나 무차입 공매도 등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 통제 수단인 제재도 수준이 낮아 위법한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 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임.

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잔고정보를 상시관리 하여 위법한 공매도를 빠르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, 위법한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분과 금융위원회가 불법행위로 얻은 금전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·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#### 가. 주식잔고관리(안 제180조의4)

- 1) 장 종료 후 주식 잔고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매매주문 시점에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.
- 2) 주식 잔고를 상시관리 함으로써 투자자계좌별 매매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매매주문을 위법한 공매도 등 이상거래로 보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음.

#### 나. 과징금의 도입(안 제429조의2)

- 1) 현행 과태료는 그 금액이 위법한 공매도를 통해 얻은 금전적 이 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위법한 공매도를 하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을 완전하게 제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.
- 2) 위법한 공매도 행위로 얻은 금전적 이득의 1.5배까지 환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음.

### 다. 벌칙의 도입(안 제443조제1항)

- 1)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위법한 공매도 행위를 처벌하기에는 부족한 제재임.
- 2) 형사처분을 부과함으로써 위법한 공매도가 경미한 법위반이 아닌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시키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 는 효과가 있음.

#### 법률 제 호

##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편제3장에 제18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80조의4(매매수량관리 및 확인) ① 주문수량 확인 및 공매도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, 외국인, 외국법인 등은 주 식잔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  -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하거나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429조의2의 제목 "(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)"을 "(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"위반한 자"를 "위반한 자 또는 제180조를 위반한 자"로 한다.

제443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| 제180조의4(매매수량관리 및 확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) ① 주문수량 확인 및 공매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도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으로 정하는 기관, 외국인, 외국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인 등은 주식잔고와 그 밖에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다.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시한다.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반사항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하거나,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있다.</u>          |
| 제429조의2(시장질서 교란행위에        | 제429조의2(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|
| 대한 과징금) 금융위원회는 제1         | <u>에 대한 과징금)</u>    |
| 78조의2를 <u>위반한 자</u> 에 대하여 | 위반한 자 또는 제180       |
|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         | <u>조를 위반한 자</u>     |
| 수 있다. 다만, 그 위반행위와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(미실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현 이익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에서 같다) 또는 이로 인하여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
회피한 손실액에 1.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.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있다.

제443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 저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.

1. ~ 9. (생 략) <신 설>

②·③ (생 략)

| 제443조(벌칙) ①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
| 1. ~ 9. (현행과 같음)    |
| 10.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 |
| 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     |
| 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    |
|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    |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